

충청북도종축장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종축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조 (설치)중 "우량종축 및 종금과 사료종자의 생산과 가축사육 기술보급을 위하여" 를
"가축개량 및 우량종축의 보급과 축산, 사료에 관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"
로 한다.

제 2조 (위치)중 "청원군 북일면 주중리" 를 "청주시 주중동" 으로 한다.

제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3조 (업무) 종축장은 다음 업무를 행한다.

1. 가축의 개량 및 우량종축의 보급
2. 축산 및 사료에 관한 시험연구
3. 기타 가축사육 및 생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